

# 光州廣域市西區報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1996年 5月  
企劃總務委員會

## 1. 審査經過

- 가. 提案日字 : 1996年 4月29日 光州廣域市 西區廳長 提出  
및 提案者
- 나. 回附日字 : 1996年 4月 29日
- 다. 上程日字 : 第55回 西區議會(臨時會) 會期中  
第1次 企劃總務委員會(1996年 5月 7日 上程議決)

##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 文化弘報室長 李 學 範)

### 가. 提案 事由

- 다양한 주민 의견수렴 통로 확대를 위한 명예기자 제도 신설
- 광고료는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발간물 이용에 따른 광고물 게재  
사용료 징수 조례를 통합 적용

### 나. 主要骨子

- 편집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2인 중 서기를 1인으로 하고, 간사는 주무계장으로, 서기는

주무계 직원으로 개정(제8조)

-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처리하도록 전면 개정(제9조 제3항)
- 현장의 다양한 주민 의견수렴과 자료수집을 위한 명예기자를 둘 수 있는 조항 신설(제11조 1항)
- 접수된 자료는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보와 구사에 게재 하던 것을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작토록 개정(11조 2항)
- 광고료 징수는 광주광역시서구공공발간물이용에따른광고물게재 사용료징수조례에 따르도록 개정(제13조)

3.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朴 鍾 根)

- 지방화시대 자치단체 업무 전반에 관한 새소식을 구민에게 전달 하는 매개체로서 구정 홍보강화와 총화 구정의 구현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 다만, 조례의 제명이 적절하지 못하여 "광주광역시서구보조례" 를 "광주광역시서구보발행조례"로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갖는다"를 "위원장은 의결 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개정 민주적 방식을 택했으며
- 자료 수집과 기사 작성에 따른 명예기자제를 도입, 능률성과 전문성을 확보,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알차고 참신한 편집으로 행정의 개선 발전사항을 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임.

4. 質疑 및 答辯 要旨 : 생 략

5. 討論 要旨 : 생 략

6. 審査 結果 : 수정안 가결

7. 少數 意見 要旨 : 없 음

8. 其他 事項 : 없 음

## 광주광역시서구보조레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1996. 5. .

발의자 장헌일 의원외 8인

### 1. 수정사유

- 본 조례안의 제명이 적절하지 못하며 또한 공개 행정 및 투명 행정을 요구하고 있는 지방 자치시대인만큼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의결코자 함.

### 2. 주요골자

- 제명 “광주광역시서구보조레”를 “광주광역시서구보발행조레”로 한다.
- 안 제8조 제2항중 “주무계장”을 “홍보기획계장”으로 하고 “주무계직원”을 “홍보기획계직원”으로 한다.

### 3. 기타 참고사항

## 광주광역시서구보조례증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광주광역시서구보조례증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광주광역시서구보조례” 를 “광주광역시서구보발행조례” 로 한다.

안 제8조 제2항중 “주무계장” 을 “홍보기획계장” 으로 하고 “주무계  
직원” 을 “홍보기획계직원” 으로 한다.

# 수정안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2인을 둔다.</p> <p>② 간사는 <u>공보계장</u>이 되고 서기는 <u>공보계</u> 직원이 된다.</p>	<p>제8조(간사와 서기) ① ----- 서기 1인 -----.</p> <p>② ----- <u>주무계장</u> ----- <u>주무계</u> 직원 -----.</p>	<p>제8조(간사와 서기)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 <u>홍보기획계장</u> ----- <u>홍보기획</u> 계직원 -----.</p>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 광주광역시서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중 '서기 2인'을 '서기 1인'으로하고, 동조 제2항중 '공보계장'을 '주무계장'으로 하고, '공보계 직원'을 '주무계 직원'으로 한다.

제9조 제3항 '위원장은 가부동수일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를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11조 제2항중 '상임위원회'를 '편집위원회'로 한다.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료수집과 기사작성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

제13조 중 '별표와 같다'를 '광주광역시서구조공공발간물이용에따른광고물게재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한다'로 한다.

'별표'는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간사와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2인을 둔다.</p> <p>② 간사는 <u>공보계장이 되고 서기는 공보계 직원이 된다.</u></p>	<p>제8조(간사와서기) ① .....</p> <p>.....</p> <p>서기 1인.....</p> <p>② ..... <u>주무계장.....주무계 직원.....</u></p>
<p>제9조(회의) ① ~ ② (생략)</p> <p>③ 위원장은 <u>가부동수일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u></p>	<p>제9조(회의)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u></p>
<p>제11조(자료수집) ① (생략)</p> <p>② 접수된 자료는 <u>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보와 구사에 게재한다.</u></p> <p>③ (생략)</p> <p>④ (생략)</p> <p>(신설)</p>	<p>제11조(자료수집)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편집위원회</u> .....</p> <p>.....</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u>자료수집과 기사작성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u></p>
<p>제13조(광고) 구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경우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u>별표와 같다.</u></p> <p>별표</p>	<p>제13조(광고) .....</p> <p>.....</p> <p>.....</p> <p>..... <u>광주광역시서구공공발간물 이용에따른 광고게제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한다.</u></p> <p>별표 삭제</p>